

제공일자	2013. 6. 19(수)	담당자	조용운 연구위원(고령화연구실)
홍보담당	김세환 부장(3775-9051)	연락처	3775-9018, 011-1790-1100 총4매

제목 :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 공청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강호)은 6월 20일 (목) 오후 2시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『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도입방안』 공청회를 개최하였음.
 - 인구고령화,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고연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.
 - 정부는 근로기간 중에 노후의료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기존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노후의료비를 보장하는 기능을 더한 신상품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.
- 보험연구원은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상품 도입에 앞서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
 - 제1주제는 “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제도적 지원”으로 상명대학교 이경희 교수가, 제2주제는 “보험 측면의 노후의료비 상품도입 및 관리방안”으로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였음.
 - 주제 발표 이후 보험학회장인 이봉주 교수(경희대)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보험업계, 소비자단체, 학계, 정책당국의 전문가들이 상품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음.
- 이경희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급격한 저출산·고령화로 인해 노후의료비 마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, 공적보장과 함께 노후의료비 마련 경로를 다원화하는 측면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.
 -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미만의 4.2배에 달하며, 2011년 기준 전체 인구의 10.5%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가 공적 의료지출의 33.3% 차지

※ 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은 15.7%, 전체 의료지출의 45.6% 차지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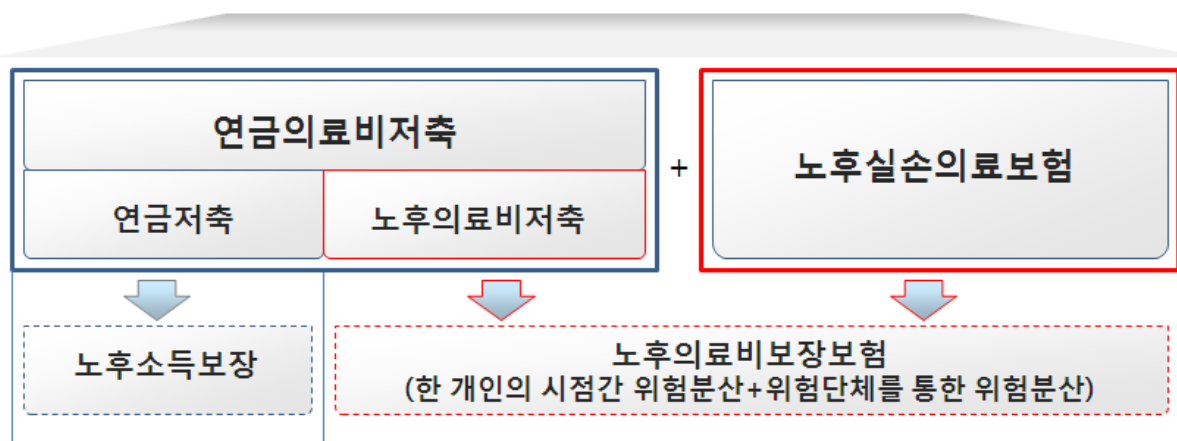
- 전 생애 의료비의 50% 이상을 소득이 급감하는 65세 이후에 지출하게 되나, 노후의료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우며,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고연령층 가입률도 저조하므로 국민들의 개인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임.

※ 실손의료보험 가입률(손해보험회사+생명보험회사)은 60세 이상 11.8%
암보험 가입률(생명보험회사)은 65세 이상 4.4%에 불과

의료저축계좌 도입과 고액공제의료보험 결합 필요

- 이경희 교수는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의료저축계좌와 고액공제의료보험을 결합한 제도가 노후의료비 보장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, 「(가칭) 노후의료비보장보험」 도입방안을 소개
- 기존 세제적격 “연금저축”에 “노후의료비저축”을 추가한 세제적격 “연금의료비저축”을 도입
 - “연금의료비저축”은 기존 “연금저축”처럼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 가능
- 「노후의료비보장보험」은 의료저축계좌인 “노후의료비저축”과 고액공제 의료보험인 “노후실손의료보험”이 결합한 상품.

<그림 1>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체계



- “노후의료비저축”은 연금저축과 함께 근로기간 중 적립하여 65세 이후 “노후실손의료보험”의 보험료 납부와 본인부담금 지급을 목적으로만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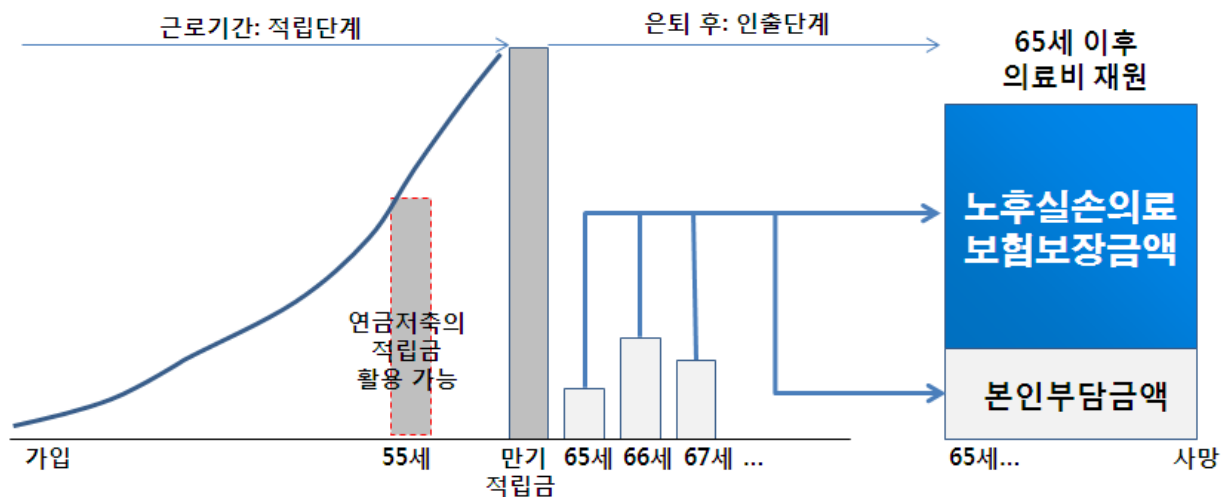
- 적립단계에서 기존 “연금저축”과 유사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별도로 부여하며, 인출단계에서는 연금소득세 대비 50% 세율 감면 등 세제측면의 지원 필요
 - “노후의료비저축”에 미처 가입하지 못하고 은퇴에 임박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신이 보유한 “연금저축” 중 일부를 “노후의료비저축”으로 설정 가능
- “노후의료비저축”은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며, 세제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하고,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설계의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.
- 소득세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, 소비자들이 의료비용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.
 - 인출과정에서 가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보험료 자동이체나 본인부담금 의료비 전용카드 활용도 고려가 필요함.

보험료 인하 및 가입연령 확대한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

- 제2주제 발표자인 조용운 연구위원은 “노후실손의료보험”의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방안, 「노후의료비보장보험」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함.
- “노후실손의료보험”은 본인부담금 상향과 과도한 의료소비 억제를 통해 보험료를 인하시켜 가입여력을 높인 개선된 실손의료보험임.
- 0세부터 75세 까지 전연령층이 가입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부터는 “의료비저축”의 인출금으로 보험료 납입
 - “노후실손의료보험”은 가입시점에 한 번만 계약적부심사를 하도록 하여 노후에도 종신까지 계약유지가 가능
 - 65세 이후 가입시 인수거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“노후의료비저축” 가입 시점이나 이후 건강 유지시기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.
 - 의료비 통제가 어려운 비급여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장비율을 현행 80% 보다 하향 조정하고 정액 고액공제를 추가하여 과잉의료수요를 억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

-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(상급병실, 요양병원, 간병비 등)에 대해서는 특약 형태로 운영하여 보장을 강화
- o 보험금청구 절차도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

<그림 2> 노후의료비 저축보험의 운영방식



- 「노후의료비보장보험」을 도입하여 노후의료비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지원함으로써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의료비 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 - o 고연령 계층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가입거절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 인하를 통해 가입여력을 높임으로써 민영보험의 사회보장기능을 제고할 수 있음.
 - o 그 밖에도 의료이용량 관리, 급증하는 노후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세대 간 분담 효율화, 효율적인 조세정책 효과 등을 기대효과로 들 수 있음.
- 향후 취약한 노후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 검토 추가 필요
 - o 국고지원 확대, 목적세 신설, 지출 효율화 방안, 건강검진 및 예방강화, 의료비의 비용상승 요인 통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
 - o 이와 동시에 민영보험을 활용하여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노후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필요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